

## 수원도시계획시설(제29호 전기공급설비:154kV 송전선로) 설치공사 토지 등 보상계획 재공고

수원시 고시 제2018-301(2018.10.25.)호로 사업계획 승인된 “수원도시계획시설(제29호 전기공급설비:154kV 송전선로) 설치공사” 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 등 보상계획을 재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의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명	시행자	위치	면적(m <sup>2</sup> )	사업기간
수원 도시계획시설 (제29호 전기공급설비) 설치공사	경기도시공사 (공사 : 한국전력공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원	17,047	실시계획인가일 ~ 2020. 12. 31

###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구분	소재지	지 번
토지	수원시 이의동	산22, 산21-2, 572-1, 572, 산4, 571, 산5, 570-3, 570-4, 1098, 산12, 산11, 산16, 산13-34, 산13-1, 1231
필지 총계 : 16필지, 17,047m <sup>2</sup>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구체적인 지번은 지정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 <a href="http://www.gico.or.kr">www.gico.or.kr</a> (정보마당-보상정보)]에서 열람 가능(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안내해 드리며 동 조서는 열람기간 동안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 3. 2.(월) ~ 2020. 3. 16.(월) 10:00~17: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제외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경기도시공사 광고사업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164 ☎ 031) 8012 - 7667
- 수원시청 도시관리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 031) 228 - 3365

####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4. 보상시기 : 2020년 4월 이후(추후 개별통지)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보상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보상의 산정 및 지급 방법

#### 가. 보상액 산정방법

- 보상법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손실보상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보상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는 동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보상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 나. 보상금 지급방법

- 보상금 지급방법은 현금 지급(지상권,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후 계좌입금)입니다.

## 6. 보상 절차

- 가.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재결(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7. 기타

-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나. 당해 사업지구 경계의 토지 중 일부는 지구계 조정으로 인해 편입면적이 조정되거나 추가편입 또는 제척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 다. 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 마.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또는 사실과 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바. 사업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으로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광고사업단 (T : 031-8012-7667, F : 031-8012-7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2.

경기도시공사 사장

붙임 : 편입토지 지번(편입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및 권리관계 등 일체)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비 고
1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22	임	3,239	105	구분지상권
2		산21-2	임	7,408	1,216	구분지상권
3		572-1	전	902	60	구분지상권
4		572	답	413	274	구분지상권
5		산4	임	4,364	573	구분지상권
6		571	답	1,262	142	구분지상권
7		산5	임	21,550	971	구분지상권
8		570-3	천	1,295	309	구분지상권
9		570-4	답	1,144	200	구분지상권
10		1098	구	365	48	구분지상권
11		산12	임	25,992	126	구분지상권
12		산11	임	12,793	563	지상권
					3,761	구분지상권
13		산16	임	30,632	5	구분지상권
14		산13-34	임	33,707	55	구분지상권
15		산13-1	임	236,921	552	지상권
	7,698				구분지상권	
16	1231	공	17,091.1	389	구분지상권	
계		<b>16필지</b>		<b>399,078.1</b>	<b>17,047</b>	

※ 위 편입토지의 지번과 면적은 사업계획변경 및 지적분할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